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****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조정** **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**세위회[2019]17호해관총서 :국무원의 승인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내반입물품 수입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1.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목 1, 2의 세율을 각각 13%, 20% 인하한다.
2. 세목1 ’약품’의 주석을 ‘국가에서 3%의 세율로 수입단계증치세를 징수하기로 규정한 수입약품은 화물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.’로 조정한다.
3. 상기 조정사항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실시한다.

조정 후의 <중화인민공화국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율표>는 별첨문서를 참조한다.별첨문서 다운로드 : 중화인민공화국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율표.pdf http://gss.mof.gov.cn/zhengwuxinxi/zhengcefabu/201904/P020190408429571771444.pdf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2019년 4월 8일 |  | **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****关于调整进境物品进口税****有关问题的通知**税委会〔2019〕17号 海关总署：　　经国务院批准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对进境物品进口税进行调整。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：　　一、将进境物品进口税税目1、2的税率分别调降为13%、20%。　　二、将税目1“药品”注释修改为“对国家规定减按3%征收进口环节增值税的进口药品，按照货物税率征税”。　　三、上述调整自2019年4月9日起实施。　　调整后的《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进口税税率表》见附件。　　 附件下载: 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进口税税率表.pdf http://gss.mof.gov.cn/zhengwuxinxi/zhengcefabu/201904/P020190408429571771444.pdf　　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　　2019年4月8日  |